

용인시 과·소업무 지도담당 규정

제정 2005. 10. 5 훈령 제206호
개정 2006. 10. 13 훈령 제241호
2006. 12. 29 훈령 제247호
2007. 7. 1 훈령 제260호
2008. 12. 29 훈령 제276호
2009. 6. 26 훈령 제285호
2009. 12. 29 훈령 제2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 본청의 국장으로 하여금 과·소의 행정을 종합지도·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① 국장의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은 별표와 같다.

② 과·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책임을 진다.

제3조(지도감독) 국장은 과·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의 근무상황, 지휘감독
2.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
3.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4조(결재 또는 보고) 각 과·소장 및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소장 전결사항외의 중요한 사항
2. 과·소장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
3. 기타 과·소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훈령 제241호>

용인시 과·소업무 지도담당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훈령 제2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훈령 제2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훈령 제27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6 훈령 제28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훈령 제2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6. 10. 13, 2006. 12. 29, 2007. 7. 1, 2008. 12. 29, 2009. 6. 26, 2009. 12. 29>

용인시 과·소업무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

1. 지도담당

담당국장	지 도 담 당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
자치행정국장	행정과,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과, 복지위생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산업정책국장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휴양과, 자원관리과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국장	교통과, 도로과, 하천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 공보관, 대외협력관 및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

2. 협조담당

구 분	사 업 소 명	비 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 정보문화기획단	
산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